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사업소세를 면제한다."를 "사업소세(재산할)를 면제하고,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(종업원할)를 면제한다."로 한다.

부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 2 조(과세면제)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·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·골프장·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2.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3.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4.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	제 2 조(과세면제) ……사업소세(재산할)를 면제하고,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(종업원할)를 면제한다. ……

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 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"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제1항의"를 "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"로 한다.

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"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" 폐지후부터 적용한다.

(다음 「페이지」에 계속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 2 조(과세면제) ①"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"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. ②(생략)	제 2 조(과세면제) ①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····· ②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종전에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 2 조(면제대상)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. 다만,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.—4. (생략) 5.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	제 2 조(면제대상) ····· 1. 현행과 같음 ····· 2.—4. (현행과 같음) 5.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및 미술관시설